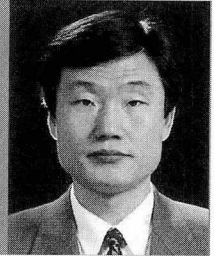


손해보험에 있어서 KFS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김 용 달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부장

1. 머리말

지난 수십 년간 정부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각종 안전법규의 제정, 기술인의 양성, 선진기술의 도입 및 관련산업의 육성을 추진해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국내의 화재안전관리 체계와 소방기술은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제도 및 소방 기술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소방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앞으로 화재예방 기술의 발전과 제도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칠 계기로 다음의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첫째는 1995년 7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며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화재안전기준인 NFC(National Fire Codes) 전집(全集)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관련기관 및 기술인과 국민들에게 보급하여 선진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FC는 12권 286개의 코드로 구성된 방대한 기술기준으로 그 분량은 약 1만쪽에 달하는 대단한 기술용어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만이 활용해 왔는데 전질이 완벽됨으로

써 일반인 모두가 쉽게 구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의 소방과 화재예방 기술에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지난 1996년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George D. Miller 회장에 의해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까지 지구촌에서 NFC가 부분적으로 자국어로 번역된 경우는 있었으나 전질을 완벽하여 보급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이다.

둘째는 지난 1998년부터 한국 손해보험업계를 대표하여 화보험회가 주관하여 만들고 있는 KFS(Korea Fire Safety Standards, 한국화재안전기준)이다. KFS는 산업 전반에 관한 화재예방 및 소방기술에 관한 기준으로서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가 만들고 있는 독창적인 화재안전기준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2. 미국의 민간 화재안전기준 제정 사례

방재기술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의 소방기술 발달과 발전 역사는 민간조직인 손해보험회사를 주축으로 제정된 각종 화재 기술과 기준이 국가 또는 각 주의 법률로 채택되거나 제도화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화재예방 기준의 제정 및 소방기술의 개발에 관련된 민간

조직으로는 NFPA와 FM(Factory Mutual System)을 들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계기준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수의 전문가들이 1896년 보스턴에 모여 회의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NFPA는 보험회사를 주축으로 방화에 관한 각종 기술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서 66,0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화재예방과 관련한 코드의 개정과 제정을 기술위원회에서 많은 기술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연방과 각주의 화재예방법률의 대부분은 NFC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FM에 관해서는 설립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재안전 기술수준이 초보적 단계였던 1820년경 FM의 설립자인 Zachariah Allen은 섬유공장 설립시 화재위험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국 최초로 소방펌프 및 소화전을 설치하였고 공장난방을 중앙난방시스템으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각종 안전설비에 의해 위험이 감소되었으므로 Allen은 보험요율의 할인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자 'Manufacturers Mutual Fire Insurance Company'라는 보험회사를 설립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FM으로 발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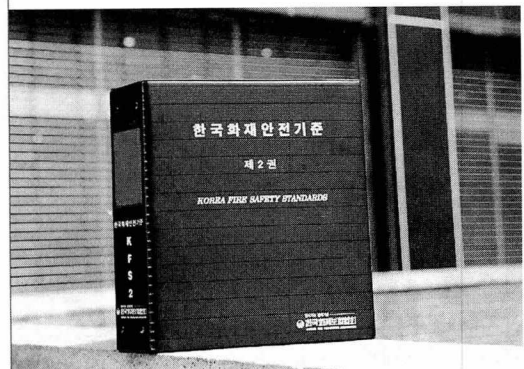
FM은 19세기말에 20여 개의 대형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로 참여하였으나 이들은 점차 합병되어 Allendale, Arkwright, Protection Mutual의 3개 보험회사만 남게 되었고 '99년 8월 3개사가 1개의 회사로 합병되었다. 특히 FM은 세계 최대의 화재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어 시험결과에 의한 소방기술기준 제정, 소방제품의 성능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이 결과는 NFC에서 채택되고 있다.

3. 민간 화재안전기준 제정의 배경 및 의미

최근 국내에서도 민간조직이 자체적으로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업종은 고객의 위험을 담보하는 사업인 손해보험회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그리고 거액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의 기간 산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석유화학공장 및 반도체 산업 등이다.

민간 화재안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고층 빌딩의 건축과 새로운 업종과 위험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인구밀집도가 높아지고 거액의 자산이 집적됨으로써 사고시 대형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의 잠재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술인력의 부족 및 시간, 재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은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보다 수준 높은 안전기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체 안전기준제정에 나서게 된 데에 있다.

따라서 이들 민간기준은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화재안전관련 법령과 기준보다도 훨씬 더 강화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주축이 된 한국화재안전기준(KFS)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업과 산업체들이 과거 수차례의 대형사고로 인해 해외 재보험자 즉, 외국 의 민간단체로부터 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아왔다.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 동안 국내 석유화학 업종에서 발생한 5건의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이 무려 890억원에 이르자 해외 재보험자들은 재보험 인수의 기피, 대폭적인 요율 인상 또는 까다로운 보험조건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 및 기술기준의 재정립을 요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사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고, 특히 석유화학공장의 선진안전관리기법인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을 조기에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92년 C방적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509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자 재보험자는 전 공장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와 함께 보험요율의 인상을 요구하였다. 현재 국내 소방법에 의하면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조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는 아니다.

이처럼 기업체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위험을 적절히 보험으로 전가하기 위해서는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의 시설과 위험관리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조직의 화재안전기준의 강화를 촉진케하는 한 요인이라 볼 수 있겠다.

둘째, IMF 이후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2000년 4월부터 일반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가 자유화되고 순보험료의 자유화도 2003년 4월 이전에 실시될 전망이다. 즉 화재보험요율의 자유화는 곧 화재보험요율의 인하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화재예방 시설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화재예방 시설과 안

전관리의 실태가 국내 소방법 등 화재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기준이 훨씬 강화된 손해보험사의 자체적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화재보험시장은 요율의 인하로 시장규모가 축소되면서 손해율은 상당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보험회사는 초년도에 다소 경쟁적으로 시장확대에 나서겠지만 손해율이 악화되면 경영의 부실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에 대비하여 Underwriting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사고의 잠재위험이 높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업체는 보험회사가 보험인수를 기피하게 되어 보험요율의 인상을 초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화재안전설비를 개선하여 보험료를 인하시키려는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과거의 사례대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반대로 우량한 업체는 우대를 받게 될 것이다.

4. KFS의 발전방향

가. KFS의 보급과 정착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제정된 분야별 화재안전기준은 선진국의 화재안전기준과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의 당면과제는 KFS를 어떻게 널리 보급하고 정착시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향후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실행되겠지만 한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인 보험료 할인제도의 도입이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HPR제도(Highly Protected Risk, 우량물건 할인제도로서 기존 보험요율의 50%~10%의 요율을 적용)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할인제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문 화재보험의

요율 할인제도는 공지할인, 소화설비할인 등으로 제한적이고 Hardware적인 면에만 혜택을 주었으나, KFS의 내용은 위험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과 안전관리, 교육, 기술수준 등 Software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 향후의 요율 할인제도는 이에 대한 사항까지 감안하여 할인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곧 HPR제도의 기본개념인 것이다.

나. 국내 기술수준에 적합한 기준 제정

화재안전기준 제정에는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그리고 전자공학 등 거의 모든 공학의 기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시험과 경험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최적의 설계 및 시공, 방재제품 성능의 신뢰성 확보,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 4개 분야로 이루어져 그 나라의 소방기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다.

KFS는 전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여러 선진사들의 화재안전기준을 참조하여 제정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기술수준이 선진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실제 적용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내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내 현실에 맞게 기준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국가를 선도하는 기준으로 정착

국내 소방법을 위시하여 화재안전에 관련된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요건들은 안전을 위한 최소의 규제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KFS는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적 구속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안전법령보다도 더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 또는 사업장의 관계자들이 안전관련 법령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소극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할 때이다.

또한, 선진기술과 기준이 대폭 도입된 KFS는 국내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의 관련법규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겠고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은 과감히 민간 화재안전 기준에 위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향후 KFS는 이름 그대로 한국의 화재안전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화재안전기준위원회 심의자료”(1999~2000)
2. 김기홍, “새천년 손해보험 감독정책 방향”, 손해보험(2000. 1)
3. 임재영, “손해보험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손해보험(1999. 11)
4. 서기식, “국내외 보험시장의 여건변화와 처리의 문제점”, 삼성화재세미나(1993. 8)
5. 한국화재보험협회, “외국의 주요 방재기관 현황”(1990. 9)
6. NFPA, NFPA Standards Making Systems (1996)